

# '22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

## < 회의 개요 >

- 일 시 : 2022. 9. 8.(목) 10:00 ~ 12:00
-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
- 참석대상 :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11명
- 주요내용 :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(안) 심의

## □ 위원 발언 내용

### < 000 위원장 >

- 11명 중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임금 위원회를 일단 시작함
  - 위원회 시작 후 위원 1명 추가 참석함
-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경제, 상공회의소 등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 경청의 기회가 있었음. 내년부터는 서울 시도 사전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거 같음
- 올해는 (1차)심의자료를 통해 관련 단체 요청사항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의견진술 요청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서면으로 같음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

### < 000 위원 >

- 생활임금 관련 적용 대상에 대해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나 2015년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를 보면 법령상 제약 및 전국에 공통적용되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현재 적용대상 이상으로 대상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
- 상위법령 개정이라든지 생활임금법 제정이 필요함

### < 000 위원 >

-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는 2015년 행정자치부 질의 답변을 결과를 통해 확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상 제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 (생활임금)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시비 100% 적용규정은 없으므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봄
-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여야 증가하는데 최근 (생활임금)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다 하회함. 한국은행에서도 물가상승률 증가를 올해 5%로 예상하는데 이를 고려해야 함
-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산이 안되는 게 확산정책을 쓰지 않은 탓도 있음. 민간 확산이 안되면 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음

### < 000 위원 >

-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교부세를 못받고 있으며, 1인당 세출액을 비교하면 서울시가 최하위임. 서울시가 재정적 역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단체 중 하나임
- 고령 연금이라든지 고정경비성 지출이 구조가 많아 지출이 경직화돼가고 있는 부분 감안 바람
- 25%의 지방부채 등 채무를 가지게 되면 재정위기단체로 관리되는데 서울시 지방채 발행 비율은 23.6%로 이러한 위기장치가 발동할 가능성 있음
-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과거 민간 확산을 위해 창의성 있는 단체를 찾아가 설득하여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쉽지 않은 부분임을 양해바람

< 000 위원 >

-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은 이해하나 우선순위 높은 쪽에 예산 투입 필요함

< 000 위원장 >

-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인상안이 1, 2안은 스펙트럼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3, 4안으로 가능한 대안을 얘기해 보면 좋겠음

< 000 위원 >

- 생활임금 시작할 때는 서울시가 제일 높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계속 낮게 인상해 온 부분이 있는 거 같음
- 3안과 4안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지 않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< 000 위원 >

- 공무원 9급 1호봉 연령대는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50대 중반이 많은데 생활임금 인상을 공무원 9급 1호봉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비교가 잘못됨

< 000 위원 >

-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에 차이가 큰 것은 공공 영역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

< 000 위원 >

- 민간 견인이 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느끼는 박탈감

문제가 있음

-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초봉과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 같음
-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안을 제시한 거라면 3안과 4안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징적 가치를 고려하여 4안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음

< 000 위원 >

- 민간위탁의 경우 같은 사무실 안에서 임금 격차가 크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거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할 부분이 있음

< 000 위원 >

- 생활임금 처음 시행시부터 빈곤 기준선 60%를 중요하게 여긴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 같음

< 000 위원 >

-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올해도 모든 부문들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

< 000 위원 >

-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생활임금법 관련한 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함,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이 제정된다면 민간의 확산이라든지, 지역별 차이들이 고려될 것임
- 서울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100% 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일자리 같은 사업은 비슷한 일이어도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봄

< 000 위원 >

-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산정 시 주거비의 9%를 반영하나 미국 대부분의 주와 유럽 같은 경우는 주거비를 32%까지 상정함.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낮게 잡혀 있음

< 000 위원장 >

- 장시간 걸쳐 대화를 하였고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 같으므로 다수결로 참석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함
- 찬반투표는 새롭게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, 거수로 결정하겠음
- 3안인 11,157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
- 이상으로 2022년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마치겠음